

감사위원회 규정

2018. 11. 1.

SKC 주식회사

제 1 조 (목 적)

- ① 이 규정은 법령,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(이하 위원회)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- ②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조 (구 성)

-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(이하 위원)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단,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은 이사회 내 이사가 추천한다.
- ③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관련법령에 따른다.

제 3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자(이하 위원장)를 선정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한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 (소 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신, 전자우편,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5 조 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 6 조 (업무범위 및 책임)

- ①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- ② 위원회의 권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)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
 - 2)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
 - 3)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
 - 4)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
 - 5) 업무재산 상태조사
 - 6) 직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
 - 7) 외부감사인의 선임 결정 또는 해임 요청
 - 8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수령 및 평가
 - 9)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
 - 10) 기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- ③ 위원회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)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
 - 2)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
 - 3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
 - 4)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기준 및 절차 문서화
 - 5) 외부감사인 후보에 대한 대면평가 수행 및 평가결과 등의 문서화
 - 6) 외부감사인의 합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및 평가결과 등의 문서화
 - 7) 기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

제 7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8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9조 (감사록)

-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각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10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(2006년 4월 11일)

제1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0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년 3월 23일)

제1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8년 11월 1일)

제1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